

야영장 운영 관리 규정

(제정 1996. 2. 28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연맹이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야영장의 정의) 야영장이라 함은 연맹 소유의 훈련원 및 야영장과 임대 또는 위탁 야영장 및 그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야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야영장의 시설 조건) 야영장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건물 및 부대시설로서 숙소, 강의실, 강당, 식당, 급수장, 화장실, 창고, 기타 편의시설
2. 야외 활동장 및 부대시설로서 숙영지, 운동장, 집회장, 캠프파이어장, 야외취사장, 급수대, 화장실, 오물처리장
3. 기타 필요시설

제4조(조직 및 운영) ① 야영장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기구를 설치하고 직원을 둔다.

② 훈련 및 연수, 야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또는 훈련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한다.

제5조(이용 대상) 야영장 이용은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, 기타 일반인에게 개방한다.

제6조(이용 방법) ①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실비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는 청소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요금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정한다.

③ 사용료는 청소년과 일반인,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물 관리) ① 야영장 관리 책임자는 야영장 및 제반시설물을 관리하며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
②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장을 비치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.

(야영장 운영 관리 규정)

제8조(장비관리) ① 야영장비 및 비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.

② 야영장비 및 비품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9조(프로그램 위탁 운영) 프로그램 위탁 운영 및 전담 프로그램 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회계) ① 야영장 운영 관리를 위한 회계업무는 회계규정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합리적인 야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입, 세출의 균형 유지 및 수지안정을 도모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, 시행한 것으로 본다.